

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8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4. 21.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으로 건립중인 구평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가 2004. 4월중에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신설하고, 기타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가. 구평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 따른 복지관의 명칭과 주소를 조례에 신설(안 제2조제5호)
- 나. 기타 용어정비(안 제5조제3항)

3. 관계법령

- 가.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(시설의 설치)

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중 “사하구종합복지회관”을 “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”으로 하고,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구평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125-23번지에 둔다.

제5조제3항 본문중 “구청장”을 “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명칭과 위치) (생략)</p> <p>1. <u>사하구종합복지회관</u>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12-278번지에 둔다.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 설></u></p> <p>제5조(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)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<u>구청장</u>은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	<p>제2조(명칭과 위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<u>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</u>----- -----.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구평종합사회복지관</u>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125-23번지에 둔다.</p> <p>제5조(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)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<u>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</u>-----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